

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
공유재산관리계획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계획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사유

- 충주시에서 구)충주의료원을 공원형 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유재산과 교환을 충청북도에 요청 하였으며,
- 충청북도는 구)충주의료원에 대해 도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, 건물 노후화 가속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재산의 취득

《충주시유림 교환 취득》

- 위 치 : 충주시 용탄동 산33-1
- 취득시기 : 2016. 5. ~ 2016. 6.
- 취득규모 : 임야 2,154,735㎡

- 재산가액 : 7,175백만원
- 취득사유 : 보존용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

□ 재산의 처분

《구)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》

- 위 치 :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 등 7필지
- 처분시기 : 2016. 5. ~ 2016. 6.
- 처분규모 : 부지 14,398.00m², 건물 10,680.68m²
- 재산가액 : 7,560백만원
- 처분사유 : 구)충주의료원 도유재산과 충주시유재산의 교환

4.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소유 구)충주의료원 부지와 충주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,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)충주의료원은 2012년 안림동으로 이전하면서 비게 되었으며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되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.
- 충주의료원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었는데 충주시가 도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 끝.